

#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02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「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」에 의거 작성한 태기산풍력발전소 및 강릉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군의회 심의를 거쳐 「200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」을 확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태기산풍력발전소

구분	당초	변경
기본지원사업비	2건 12,571천원	1건 12,571천원
특별지원사업비	2건 606,359천원	13건 606,359천원

### ○ 강릉수력발전소

구분	당초	변경
용자지원사업비	54,826천원	<주민소득증대사업비> 1건 54,826천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서 -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#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안

## 1. 사업추진 근거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-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지침(2008.10월 개정)

## 2. 사업추진 절차

### ○ 그 동안 추진상황

- 태기산풍력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제출 : 2007.12.7
-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(기본+특별지원사업비) : 2008.6.12
  - ※ 집단민원 발생 및 사업자와 주민간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
- 변경사업계획서 제출(면→군) : 2008.11.21
- 태기산풍력발전소 준공식 : 2008.11.26

### ○ 심의결정 후 추진계획

- 변경사업계획서 발전소 경유 「한전 전력기반센터」 제출
- 「발전소주변지역지원 중앙심의위원회(지식경제부)」 심의·확정·통보
- 보조금교부 및 집행, 보조금 정산

## 3. 사업계획변경(안)

### 가. 기본지원사업비

#### ① 변경전(당초)

- ▷ 봉평면 감자저장고 보수공사(7,000천원)
- ▷ 봉평면 복지회관(경로당)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 구입(5,571천원)

#### ② 변경후

- ▷ 5개마을 경로당, 마을회관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(12,571천원)

## 나. 특별지원사업비

### ① 변경전(당초)

- ▷ 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회관보수(306,359천원)
- ▷ 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주민자녀 육성사업(300,000천원)

### ② 변경후

- ▷ 진조리 마을길포장(60,000천원)
- ▷ 진조리 저장고 리모델링(21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노인정 개축보수(40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부녀회 창고설치(2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농산물판매대설치(1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마을진입도로포장(18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마을안길도로보수(5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노인운동기구(10,000천원)
- ▷ 면은2리 마을운동기구(5,000천원)
- ▷ 무이1리 마을체험센터건립(81,000천원)
- ▷ 무이2리 마을경로당부지구입(81,000천원)
- ▷ 흥정리 산책로개설 및 체육공원조성(81,000천원)
- ▷ 봉평면 주민자녀 장학재단설립(201,359천원)

## 다. 용자지원사업비

### ① 변경전(2008년까지)

- ▷ 용자지원사업비로 1996~2000년까지 총 50,000천원 지원됨.  
- 2009.1.5기준 잔액은 이자포함 54,826천원임(용자실적 없음)

### ② 변경후

- ▷ 수하리회관 리모델링사업 및 물품 구입 (54,826천원)  
- 강릉수력발전소 발전중단에 따라 기 확보된 용자지원사업비를 주민복지증대 사업비로 변경

# < 관계법령 발취 >

## 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 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)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이라 한다)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>

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 (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## 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

제9조 (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<개정 1997.6.11>)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. <개정 1997.6.11, 2001.2.24, 2005.12.30, 2008.2.29>

1. 읍·면지역에 가동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
2. 읍·면지역에 가동 건설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이상의 화력 발전소 또는 수력 발전소
3.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

제10조 (지역위원회의 구성)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지역위원장"이라 한다)은 제9조 각 호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1997.6.11, 2001.2.24, 2005.9.14, 2005.12.30>

1.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「공직선거법」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 4인 이내. 다만,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하며,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 중 1인을 추가할 수 있다.

2.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당해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

4.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(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3인을 포함한다) 이내

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1.2.24>

제11조 (지역위원회의 기능)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

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1997.6.11, 2001.2.24, 2005.12.30>

1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- 2.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**
- 2의2.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당해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17조 (지원사업계획의 수립<개정 2001.2.24>)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1.2.24>

1. 사업의 목적
2. 사업의 개요
3. 사업별 투자계획
4. 시행기간
5. 분기별 자금사용계획
6.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

②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2.24, 2005.12.30, 2008.2.29>

③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2.24, 2005.12.30, 2008.2.29>

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1.2.24, 2005.12.30, 2008.2.29>

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2.24, 2008.2.29>

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사업목적 범위안에서의 사업규모 위치 및 사업시행기간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2.24>

## □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

### 6. 사업계획의 변경 \*'09년 신규 추가항목

#### 나. 변경 사유별 처리절차

##### (1) 사업간 변경

##### 가) 사업간 변경이란 ?

- 1) 사업시행주체의 변경(발전소 ↔ 지자체)
- 2) 특별지원사업은 변경사항 일체**
- 3) 타 사업으로의 변경(예, 공공시설사업 → 소득증대사업)

##### 나) 변경절차

- 1) 지역위원회심의(특별지원사업은 지방의회 심의)후 발전소 및 발전회사 본사를 경유하여 지경부(전담기관) 제출
  - \* 지역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시행자(발전소와 지자체)간 협의
- 2) 신청양식 : 시행규칙 별지 제 3호, 4호서식을 활용하여 제출
- 3) 지경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, 변경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01.3.23>

지원사업변경내역서		
시행자	평창군청	
대상발전소	태기산풍력발전	
구분	변경전	변경후
사업종류	기본지원사업	기본지원사업
사업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평면 감자저장고 보수공사 지원</li> <li>• 봉평면 복지회관(경로당)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 구입비 지원</li> </ul>	경로당, 마을회관 운영비 물품 구입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평면 마을공동 저장고 보수비 지원</li> <li>• 봉평면복지회관(경로당)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비 지원</li> </ul>	경로당, 마을회관 운영비 물품 구입비 지원
사업비(천원)	12,571	12,571
사업장소	봉평면	봉평면
사업시행기간	2007.12~12	2009.1~12
기타		
변경사유등 특기사항		
태기산풍력발전측과 송전선로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 되면서 마을로부터 지원 사업비 신청이 없다가 최종 합의가 09.9.12마을별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08.10.27 결정되어 절대공기 부족		
※ 본 내역서는 변경하는 사업별로 작성합니다.		

지원사업변경내역서		
시 행 자	평창군청	
대 상 발 전 소	태기산풍력발전	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사 업 종 류	특 별 지 원 사 업	특 별 지 원 사 업
사 업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회관보수</li> <li>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주민자녀 육성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조리 마을길포장</li> <li>진조리 저장고 리모델링</li> <li>면온2리 노인정 개축보수</li> <li>면온2리 부녀회 창고설치</li> <li>면온2리 농산물판매대설치</li> <li>면온2리 마을진입도로포장</li> <li>면온2리 마을안길도로보수</li> <li>면온2리 노인운동기구</li> <li>면온2리 마을운동기구</li> <li>무이1리 마을체험센터건립</li> <li>무이2리 마을경로당부지구입</li> <li>홍정리 산책로 개설 및 체육공원조성</li> <li>봉평면 장학재단설립</li> </ul>
사 업 개 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회관보수비지원</li> <li>진조리, 무이리, 백옥포리, 재산리 주민자녀 육성사업비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조리 마을길포장</li> <li>진조리 저장고 리모델링</li> <li>면온2리 노인정 개축보수</li> <li>면온2리 부녀회 창고설치</li> <li>면온2리 농산물판매대설치</li> <li>면온2리 마을진입도로포장</li> <li>면온2리 마을안길도로보수</li> <li>면온2리 노인운동기구</li> <li>면온2리 마을운동기구</li> <li>무이1리 마을체험센터건립</li> <li>무이2리 마을경로당부지구입</li> <li>홍정리 산책로 개설 및 체육공원조성</li> <li>봉평면 주민자녀 장학사업</li> </ul>
사업비(천원)	606,359	606,359
사 업 장 소	봉평면	봉평면
사 업 시 행 기 간	2007.12~2008.12	2009.1~12
기 타		
변경사유등 특기사항 태기산풍력발전측과 송전선로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 되면서 마을로부터 지원 사업비 신청이 없다가 최종 합의가 09.9.12마을별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08.10.27 결정되어 절대공기 부족 ※ 본 내역서는 변경하는 사업별로 작성합니다.		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01.3.23>

지원사업변경내역서		
시행자	평창군청	
대상발전소	강릉수력원자력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사업종류	용자지원사업	특별지원사업
사업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릉수력 용자지원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하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</li> </ul>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인당 5백만원</li> <li>용자상환5년(2년거치 3년상환)</li> <li>이율(연3%)</li> <li>대관령면 전지역 대상 (신청자중 수하리 지역우선순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하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</li> </ul>
사업비(천원)	54,826	54,826
사업장소	대관령면	수하리
사업시행기간	1996~2007	2009.1~12
기타		
변경사유등 특기사항		
현재 용자지원금에 대한 추가 신청이 없는 상태로 수하리 주민들로부터 수하리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요구		
※ 본 내역서는 변경하는 사업별로 작성합니다.		

210mm×297mm  
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